

[별표 1]

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

1.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, 옥상 등의 경우에는 1.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, 난간은 철근콘크리트,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는 난간 주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2. 옥외영업장에는 음향장치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.
3.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, 향초, 난로, 보일러(화목, 유류, 가스, 기타 화석원료 등)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4.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.
5.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, 파라솔, 테이블,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하여야 한다.
6.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별표 2]

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

1.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(데우기) 등 조리가 불가하며, 옥내영업장에서 조리·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2.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,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3.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파라솔 등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옥내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.
5. 일반·휴게음식점 중 건물 내·외 영업장 합계 면적이 100㎡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제2019-185호(2019.6.7.) 및 제2022-479호(2022.1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3.16.), 제2019-74호(2019.6.17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5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19호(2023.3.2.)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압정동 189-1번지 일대 / 4,729.7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우리자산전략(주) 대표 이종근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26일
5.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
 - 가.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대표자	이 창 하, 이 창 재	이 종 근

- 나. 측량,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
 - 다.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: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
 - 라. 토지소유권(사업시행 후) 변경 :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
6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2) 비치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2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제2019-185호(2019.6.7.) 및 제2022-479호(2022.1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,59(2015.7.30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5호(2018.3.16.) 및 제2023-14호(2023.2.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6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20호(2023.3.2.)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앞대 / 6,987.3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 이종근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26일
- 5.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
 - 가.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대표자	이 창 하, 이 창 재	이 종 근

- 나. 측량,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
 - 다.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: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
 - 라. 토지소유권(사업시행 후) 변경 :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
6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2) 비치